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 303호
(2013. 11. 29)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 303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1.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가. 사료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1>

-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사료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3-7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별표 2>
- 계열화사업자는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료성분등록증을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료 공급처 또는 사료성분이 변경될 경우 계약농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사료성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요구하는 사료의 성분분석 자료(이미 분석된 자료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새끼가축의 품질

- 계열화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새끼가축의 품종, 부화장, 해당 새끼가축·종란을 생산하는 종축장(종돈장, 종계장, 종압장 등)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새끼가축의 품질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리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관절이 정상이 아닌 것
 - 부리가 오염되어 있고 붉은 반점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색상을 띠고 있지 않은 것(가금류)
 - 배꼽 주위 난각막 잔유물 및 잔존 난황이 있는 것(가금류)
 -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모넬라, 난계대 질병 등이 있는 것(가금류)
 -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구제역 등 질병 등이 있는 것(돼지)
-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가금류)
- 계열화사업자는 새끼가축 운송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출하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한다.(가금류)
 - * 유해성 세균 :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및 *E. coli* O157:H7 등을 포함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균
- 출하 전 및 출하 시 날개(가금류)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
- 출하되는 가축은 가슴, 배, 등 및 옆구리 부위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정도로 멍 또는 창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 출하 시 비정상적(목이 비틀어져 있는 현상 등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한 것을 모두 포함)인 상태로 공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사육시설

- 계약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단열시설 :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유리, 철판, 석고보드, 합판, 나무판자, 유리솜, 콜크보드, 스티로폼, 보온덮개, 우레탄, 천막, 골드폼 및 비닐 등

- 물을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과 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급이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급수시설 : 니플급수기, 일자형급수기, 종형급수기 등
- 무창시설은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무창시설은 공기를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배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팬의 크기·수량·위치는 축사크기에 따라 공기를 적당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방축사는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계약농가 사정에 따라 자연환기시설도 인정할 수 있다).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은 별표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소독 및 방역시설

- 소독 및 방역 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가. 시행일

- ◎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축산법령

별표1. 한국 사양표준 영양소 요구량(사료 kg당 함량)

《육용오리》

구 분	0~3주령	3~8주령
대사에너지(metabolizable energy), kcal/kg	2,900	3,000
조단백질(crude protein), %	22.0	18
아미노산(amino acids)		
아르기닌(arginine), %	1.10	1.03
히스티딘(histidine), %	0.32	0.23
이소류신(isoleucine), %	0.63	0.52
류신(leucine), %	1.26	1.03
라이신(lysine), %	0.90	0.73
메티오닌(methionine), %	0.40	0.33
메티오닌+시스틴(methionine+cystine), %	0.70	0.60
트레오닌(threonine), %	0.65	0.48
트립토판(tryptophan), %	0.23	0.19
발린(valine), %	0.78	0.63
다량무기질(macro minerals)		
칼슘(calcium), %	0.65	0.62
비피틴태인(nonphytate phosphorus), %	0.40	0.33
칼륨(potassium), %	0.83	0.80
나트륨(sodium), %	0.15	0.15
염소(chlorine), %	0.12	0.12
마그네슘(magnesium), mg	500	500
미량무기질(trace minerals)		
망간(manganese), mg	50	50
아연(zinc), mg	60	60
셀레늄(selenium), mg	0.20	0.20
지용성비타민(fat soluble vitamins)		
A, IU	2,500	2,500
D ₃ , IU	400	400
E, IU	10	20
K, mg	0.5	0.5
수용성비타민(water soluble vitamins)		
B ₂ (riboflavin), mg	4.0	4.0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mg	11.0	11.0
나이아신(niacin), mg	55	55
B ₆ (pyridoxine), mg	2.5	2.5
필수지방산(Essential fatty acid)		
리놀산 (Linoleic acid), %	1.0	1.0

별표2.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농림부 고시 제2013-76호)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비 소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12ppm	
		어류용 배합사료	10ppm	
		기타 배합사료	2ppm	
	단미사료	광물성(식염류를 제외한다), 혼합류	40ppm	
불 소	배합사료	고기소용	100ppm	
		젖소용	50ppm	
		돼지용	150ppm	
		닭용	300ppm	
		프리믹스사료	1,800ppm	
	단미사료	다량광물질류 및 미량광물질류, 혼합류	1,800ppm	
		인산염류 및 칼슘염류	인 함량의 1/100 이하	
크 롬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다)	100ppm	
	단미사료	동물성 단백질류	어분 및 어즙축사료	100ppm
			우모분·육분·육골분 및 동물성단백질 혼합물	300ppm
		피혁가공부산물	1,000ppm	
	동물성무기물, 혼합류	100ppm		
납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30ppm	
		기타 배합사료	10ppm	
	단미사료	동물성단백질류	10ppm	
		알팔파, 건초	10ppm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20ppm	
		동물성무기물류, 광물성(식염류는 제외한다), 혼합류	30ppm	
수 은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0.5ppm	
		기타 배합사료	0.4ppm	
	단미사료	동물성단백질류 및 무기물류, 광물성(식염류를 제외한다),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혼합류	0.5ppm	
		알팔파, 건초	0.4ppm	

:: 축산법령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카드뮴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50ppm
		기타 배합사료 (기타동물 · 어류용은 제외한다)	1.0ppm
	단미사료	곡물류, 식물성단백질류, 어분(배합사료 원료용은 제외한다),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2.5ppm
		광물성(식염류는 제외한다), 혼합류	50ppm
아플라톡신 B ₁ , B ₂ , G ₁ , G ₂	배합사료	어린송아지 및 어린병아리용, 젓먹이 · 젓뎀돼지용, 육계전기용, 비유젓소용	10ppb
		기타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다)	20ppb
	단미사료	식물성단백질류, 곡물류, 곡물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혼합류	50ppb
	셀레늄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프리믹스사료를 제외한다)
	단미사료	혼합류	2ppm
오클라톡신A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프리믹스사료는 제외)	200ppb
	단미사료	곡물류, 곡물부산물류	200ppb

별표3.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 오리

-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구 분	수당면적	비 고
산란용 오리	0.333m ² /마리	
육 용 오리	0.246m ² /마리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은 0.15m ² /마리 적용

※ 육성오리와 새끼오리는 성오리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오리1마리=육성오리2마리=새끼오리4마리)

○ 성장단계 기준

구분	새끼오리	육성오리	성오리
산란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육용 오리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 6주령 미만	6주령 이상

○ 닭

- 성장 단계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5m ² /마리	
	평사	*	
산란 육성계	케이지	0.025m ² /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무창계사		39kg/m ²
	개방계사	강제환기	36kg/m ²
		자연환기	33kg/m ²
	케이지		0.046m ² /마리

※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성장단계 기준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산란계 · 종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함(성계1마리=육성계2마리=병아리 4마리)

